

교원 인사 규정

제 정	:	2003. 10. 1.
개 정	:	2005. 8. 16.
개 정	:	2009. 10. 1.
개 정	:	2013. 4. 1.
개 정	:	2013. 9. 1.
개 정	:	2016. 3. 1.
개 정	:	2018. 3. 1.
개 정	:	2019. 3. 1.
개 정	:	2019. 11. 25.
개 정	:	2020. 2. 17.
개 정	:	2020. 6. 15.
개 정	:	2021. 6. 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금강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원에 대한 신규임용, 승진, 재임용, 복무 등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구분 및 직위) ①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하고, 전임교원은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② 전임교원은 일반전임교원, 연구전임교원(HK교수 포함), 강의전담교원 등으로 구분한다.

③ 비전임교원은 석좌교수, 초빙교수, 외래교수, 명예교수, 객원교수, 연구교수(HK연구교수 포함), 겸임교수, 강의전문교수, 강사로 한다.

④ 전임교원과 직위는 교육 및 연구경력 그리고 연구실적에 따라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⑤ 탁월한 교육 및 연구업적이 인정되는 교내외인사는 석좌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제3조(적용대상) ① 본 규정은 전임교원 중 일반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연구전임교원(HK교수포함) 과 강의전담교원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② 비전임교원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4조(교원의 자격) ① 교원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16조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및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정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신규임용교원은 박사학위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학사학위 이상인 자를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신규임용은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5조(임용의 구분 및 절차) ① 교원의 임용은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 등으로 구분하여 계약제로 임용한다.

② 임용은 해당 부서장의 추천, 해당 위원회의 업적심사, 교원인사위원회의 임용심의 순으로

실시하며 계약제 임용에는 다음의 내용들을 교원임용계약서(별지1)에 명시한다.

1. 근무기간
2. 급여
3. 근무조건
4. 업적 및 성과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6. 그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겸직금지) 삭제 <2016. 3. 1.> 제9장 복무 제33조의 7(신설)로 이동

제7조(교원의 정년)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다만, 본 대학교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교원업적평가) 교원은 교육(학생지도와 교육개선을 포함한다), 연구 및 봉사활동 등에 대한 업적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업적평가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2장 교원인사위원회

제9조(교원인사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위원장이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3장 신규임용

제10조(절차)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채용으로 하며 그 절차는 따로 정한다. 다만, 교원의 수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개경쟁채용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의1(심사위원의 제한) 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위촉 시 지원자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 6. 29.>

② 위촉된 심사위원이 지원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21. 6. 29.>

제11조(직위) 신규임용 교원의 계약제 임용직위는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한다.

제12조(기간) 교원의 신규임용은 계약제 임용직위에 관계없이 2년의 계약제로 임용한다.

제13조(경력연수) ① 신규임용 교원의 직위별 계약제 임용에 필요한 최소경력연수(교육 및 연구경력연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15.>

연구·교육 직명	학력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교수		4	6	10
부교수		3	4	7
조교수		2	2	4
강사		1	1	2

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경력연수의 산출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4조(연구업적) ① 신규임용 교원의 직위별 계약제 임용에 필요한 최소연구업적점수는 다음과 같다.

임용직위	평가대상기간	연구업적최소점수
조교수	최근5년 이내	1000점 이상
부교수	최근7년 이내	2100점 이상
교수	최근9년 이내	3000점 이상

② 정부기관 등의 유관 특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대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와 평가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5조(구비서류) 교원으로 신규임용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성적 및 학력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3.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각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2부
5. 주민등록초본 2부
6. 주민등록등본 2부
7. 채용신체검사서(대학병원 또는 국·공립종합병원 발행) 1부
8. 신원진술서(소정양식) 2부
9. 인사기록카드(소정양식) 2부
10.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장 승진임용

제16조(절차) 승진임용은 현 직위의 계약제 임용기간 이내에 직위별로 정한 경력연수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 평가점수가 승진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된 직위에 의한 계약제로 임용한다. 다만, 제12조의 계약제 임용기간 중인 교원과 휴직 중인 교원은 승진할 수 없다.

제16조의2(승진제한) ① 제16조의 단서 외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다음 각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6개월을 더한 기간, 공금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前)처분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새로운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기산한다.

③ 징계처분으로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에는 잔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은 복직한 날로부터 다시 기산한다.

제17조(시기 및 기간) ① 교원 승진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로 하며, 각 교원은 해당 시기에 승진한다.

② 교원의 승진된 직위에 의한 계약제 임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승진직위	임용기간
부 교 수	5년 이내
교 수	정년(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제로 하되 7년 이내)까지

제18조(기준) ① 교원의 승진직위별 계약제 임용에 필요한 경력연수는 다음과 같다. 경력연수 산출 시에 전적대학에서의 해당 직위(3년제 이하의 대학은 상위직위, 4년제 정규대학은 동일 직위) 재직연수를 경력연수로 인정할 수 있다.

승진직위	현직최소연수	총경력연수
부 교 수	조교수로 6년 다만, 종전규정에 따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된 자는 전임강사 임용기간을 포함한다.	10년
교 수	부교수로 5년	15년

② 교원의 승진직위별 계약제 임용에 필요한 평가대상기간의 연 평균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일부 업적분야에서 최소점수 미달 시 타 업적분야별 최소점수를 초과하는 실적의 대체 인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평가 유형별, 업적 분야별 연간 최소점수>

[단위: 점, (%)]

교육형				연구형			
교육	연구	봉사	소계	교육	연구	봉사	소계
480	200	120	800	280	400	120	800
(60)	(25)	(15)	(100)	(35)	(50)	(15)	(100)

③ 교원업적점수 미달로 인하여 승진 심사에서 부적 판단을 받은 교원은 이후 6개월 단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하여 승진 심사를 한다.

1. 교육과 교육개선 및 봉사업적점수 : 승진 직위에 필요한 최근의 평가기간의 점수 합계로 평가한다.
2. 연구업적점수 : 승진 직위에 필요한 평가기간의 1.5배까지 현 직위의 최근 평가기간의 누적 점수로 평가한다.

④ 2016학년도 이후로 계약제에 의해 신규 임용된 교원의 승진 추가 충족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현직(최초임용) 소요년수 기간 중 기숙거주 상시 지도
2. 현직(최초임용) 소요년수 기간 중 연구실적으로 국제저명 학술지 게재논문 1편(단독기준) 이상 포함되어야 함

제5장 재임용

제19조(절차) 계약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 평가점수가 재임용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 직위에 대한 계약제로 임용한다.

제20조(시기 및 기간) ① 교원 재임용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로 하며, 각 교원은 해당 시기에 재임용한다.

② 교원의 재임용된 직위에 의한 계약제 임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임용기간
조 교 수	6년 이내
부 교 수	5년 이내
교 수	정년(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제로 하되 7년 이내)까지

제21조(기준) ① 교원의 재임용직위별 계약제 임용에 필요한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평가 유형별, 업적 분야별 연간 최소점수>

[단위: 점, (%)]

교육형				연구형			
교육	연구	봉사	소계	교육	연구	봉사	소계
480	200	120	800	280	400	120	800
(60)	(25)	(15)	(100)	(35)	(50)	(15)	(100)

② 신규 계약제 임용 교원의 재임용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 유형별, 업적 분야별 연간 최소점수>

[단위: 점, (%)]

교육형				연구형			
교육	연구	봉사	소계	교육	연구	봉사	소계
480	200	120	800	280	400	120	800
(60)	(25)	(15)	(100)	(35)	(50)	(15)	(100)

제22조(제한) 삭제 <2013. 4. 1.>

제23조(신청, 결정, 이의신청) ①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 신청이 가능함과 그 신청기간, 재임용심의자료 제출, 재임용심의신청지연에 따른 불이익 등의 내용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학부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재임용 심의 신청에 따른 재임용 여부 결정 후 그 사실은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원인사위원회가 제3항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여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정년보장

제24조(근거) 삭제 <2013. 4. 1.>

제25조(적용범위) 이 규정 제4장 또는 제5장에 의거 승진임용 또는 재임용으로 정년보장을 받는 교원에게 적용한다.

제26조(정년보장심사위원회) ① 교원의 정년보장 심사를 위하여 정년보장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정년보장심사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에 둔다.

제27조(신청 및 절차) ① 정년보장심사를 받고자 하는 교원은 정년보장임용일 전에 정년보장심사원(지정양식) 및 정년보장추천서(해당학부 재적교수의 과반수 찬성 서명 -지정양식)을 교원인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원인사 부서는 승진임용 및 재임용 절차를 준용한다.

제28조(심사기준) 정년보장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 임용되는 교원의 경우는 이 규정 제18조 교수 승진임용 기준에 준한다.
2. 신규임용 시 교수로 계약제 임용된 교원이 계약기간 만료로 재임용되는 경우는 이 규정 제21조 제2항에 준한다.

제29조(정년보장의 취소) 교원인사규정에 제시된 해임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정년보장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심의를 받아 이사장이 정년보장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장 보 직

제30조(보직자의 임면) 본 대학교의 각 부서에서 정한 직책에 교원으로 보임할 경우 그 임면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실시한다. 단, 이사장의 사전전결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부이사장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7.>

제31조(보직의 임기) 교원으로 보임된 보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도에 사임 또는 해임에 따른 후임자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8장 보 수

제32조(보수) 교원의 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보수규정에서 정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장 복 무

제33조(성실의무) 교원은 본 대학교의 봉직자로서 교육, 학술연구 및 학생지도를 성실히 수행하여 학생의 학업성취와 본 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교원관련 법령 및 학내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의2(복종의무) 교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장과 이하 보직교수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친절공정의무) 교원은 고등교육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3조의4(비밀준수의무) 교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33조의5(청렴의무) 교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제33조의6(품위유지의무) 교원은 교수자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의7(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전임교원은 본 대학교의 본직 이외에 다른 직업을 겸직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타 기관으로부터 겸직허가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인정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제33조의8(집단행위금지의무) 교원은 노동운동 기타 교육이외의 목적을 위한 집단행동을 하여 교원으로서의 본분에 배치되거나, 품위손상 또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의9(직장이탈금지의무) ① 교원은 학기 중 주 5일 근무와 매학기 학칙 등 본 대학교 규정으로 정한 강의 및 학생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한 세부내용 및 방학기간 중 근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의10(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교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0.02.17.>

1. 학부생, 대학원생 또는 직무 관련자 중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직무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학부생, 대학원생 또는 직무 관련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그 밖에 학부생, 대학원생, 직무 관련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34조(부서간 겸직근무) 총장은 본 대학교의 부서 간 상호지원이 필요한 교원에 대하여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타교출강) ① 교원의 타교출강은 1개 대학에 한하여, 1주 1일 6시간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타교출강을 원하는 교원은 개강 2주전까지 타교출강에 대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장 상 별

제36조(포상)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업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2.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될 때

② 포상은 표창으로 하며 별도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징계)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정관 및 본 대학교의 제규정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38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 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④ 견책은 과오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받고 훈계한다.

제39조(징계절차) 징계의 절차, 재심 등에 관하여는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하며, 교원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장 보 칙

제40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과 정관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5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개정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제18조 ②항의 승진에 필요한 연구업적 및 제20조 ①항 및 ②항의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업적 점수는 평가기간 전체를 100%로 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 이후의 연구업적을 각각 기간별로 안분하여 적용한다.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의 승진 또는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별 최소 점수와 합계점수는 2016.
3. 1이후의 실적부터 적용하고,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부터 재직 중인 교원의 승진 또는 재

임용에 필요한 최소점수기준과 실적 계산은 종전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의③, 제14조의②, 제14조의③, 제18조의②, 제21조, 제33조의7)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20학년도 9월 1일 이후 임용된 신규교원은 이 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